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5
------	-----

2022. 9.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2015. 12. 15.).

나. 업무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나. 위치: 성북구 길음동 1286-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다. 규모: 지상 1~3층(연면적 2,925.23㎡, 전용 1,791.1㎡)

라. 사업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마. 주요시설: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바.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사. 출연금액(안): 295,940천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1,479,700천원)의 20%분담 (인건비 767,500천원, 경상비 712,200천원) ※ 사업비 제외

아.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서울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서울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 서울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4자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운영비의 20%를 출연금으로 교부하고 있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운영비 부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0년 11월 1일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1~3층(전용 1,917㎡)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성북 노블레스 빌딩을 임차할 때와는 달리 전용 면적의 증가, 시설 증대 및 인력 확대에 따라 운영료가 크게 증가하였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안)
총 운영비	438,690	843,500	1,452,300	1,428,300	1,479,700
서울시 출연금 (증감액)	87,738 (1,051)	159,388 (71,650)	286,689 (127,301)	285,660 (△1,029)	295,940 (10,280)
비 고		센터 이전 (’20.11.)	성북미디어 문화마루 개관 (2021.5.27.)		

다. 동의안의 타당성

-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약 14억 8천만원으로 서울시는 이 중 20%인 2억 9천6백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협약에 근거한 출연금의 세출예산 편성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2020년 4월부터 동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 미디어랩’의 민간위탁(2022년 5억 9백만원)을 동시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지원, 미디어 인프라지원·교육강좌 등이 주 업무임.

- 최근 서울시는 미디어 랩의 기능이 일부 타 시설(서울창업허브 창동)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운영을 계약 종료시점인 2023년 3월로 중단이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미디어 랩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당시 서울시청자미디어 센터와 물리적으로 근접하여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각각의 사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운영에 동의하였음.
- 하지만 시설을 갖추어 놓은지 3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서울 미디어 랩 연계사업목록 〉

연 번	사 업 명	사업내용(참가업체)									
1	시제품 공동기획	청각장애인 민원처리를 위한 수어통역 단말기 '손말, 데스크' 개발 (㈜함께걷는미디어랩)									
2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	TBS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실버넷티비)									
3	미디어 교육강좌 개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강좌(디지털미디어코딩, 웹드라마제작, 아나운서스피치) 개설 (소셜감성, 크랭크인, 찬스웨이브)									
4	K-테스트베드 구축·운영 (3,4분기 예정)	- 서울센터 시설, 장비를 활용한 입주기업 시제품 테스트베드 설치 및 테스트 지원 ※ 설치장소 :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미디어체험관(1층)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제품명</th> <th>내 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손말.데스크</td> <td>수어통역 단말기(주)함께걷는 미디어랩)</td> <td>청각장애인 민원 처리</td> </tr> <tr> <td>액션박스</td> <td>MR(혼합현실, Mixed Reality) 기반 실감형 체험교육 단말기 (믹스비전(주))</td> <td>화재예방 등 기관 교육 활용</td> </tr> </tbody> </table>	시제품명	내 용	비 고	손말.데스크	수어통역 단말기(주)함께걷는 미디어랩)	청각장애인 민원 처리	액션박스	MR(혼합현실, Mixed Reality) 기반 실감형 체험교육 단말기 (믹스비전(주))	화재예방 등 기관 교육 활용
		시제품명	내 용	비 고							
손말.데스크	수어통역 단말기(주)함께걷는 미디어랩)	청각장애인 민원 처리									
액션박스	MR(혼합현실, Mixed Reality) 기반 실감형 체험교육 단말기 (믹스비전(주))	화재예방 등 기관 교육 활용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
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5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 나. 위치: 성북구 길음동 1286-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 다. 규모: 지상 1~3층(연면적 2,925.23㎡, 전용 1,791.1㎡)
- 라. 사업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 마. 주요시설: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 바.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사. 출연금액(안): 295,940천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1,479,700천원)의 20%분담 (인건비 767,500천원, 경상비 712,200천원) ※ 사업비 제외

아.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서울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2023 회계연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 장정숙 (☎ 2133-6440)